

전주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33967 판결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담당변호사 박지원

피 고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으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그 중
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2024. 5. 21.까지는 연 6%,
나.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5.부터 2024. 5. 21.까지는 연 5%,
다.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2.부터 2024. 5. 2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9. 6.경 각종 샷시와 건축용 판유리 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자본금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면서, 원고가 이사로서 생산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는데, 피고의 전체 주식 중에 원고가 40%, C이 60%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경매를 통하여 원고가 약 650,000,000원을 투자했던 유한회사 D의 영업자산 등을 약 1,200,000,000원에 낙찰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입찰보증금 115,000,000원을 마련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각 예금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었는데, 특히 피고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아내 E이 2020. 5. 29.부터 6회에 걸쳐 원고의 예금계좌로 88,5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C은 원고를 "A사장"으로 호칭하면서 2022. 2. 14.경 '투자금을 정리하자'라거나 2022. 4. 28.경 '피고와 원고의 근로계약을 5. 1.부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각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라. C은 원고가 사업자금 차용명목으로 2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거나 E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88,5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와 E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을 뿐 아니라 C과의 금전거래

정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직원 F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별도의 증좌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원고가 피고의 운영을 위해 가수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대여한 후 변제 받은 것으로서 출자금과 별개의 차입금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E에 대한 위 각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2,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9호증의 1, 제11호증의 2, 제16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20. 4. 1. 피고와 공장의 물품생산에 필요한 기계류와 유체동산 등에 관하여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정한 매매대금 15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기한인 2020. 4. 15.까지 피고에게 이를 설치인도하고 그 다음날인 2020. 4. 16.까지 실시한 가동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험 가동한 다음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0. 6.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든 피고의 공식적인 회계장부 기재와 달리 피고의 설립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기계류와 유체동산을 현물출자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임금 또는 임원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5.경부터 2022. 4.경까지 생산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말경 월 5,000,000원에서 6,000,000원 사이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데, 2022. 10.분부터 2022. 4.분까지 15개월분의 보수 합계 75,000,000원(=5,000,000원×15개월) 이상의 보수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의

보수로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임을 전제로 위 금액 상당의 임금과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선 각 증거와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가 피고의 단순한 종업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피고의 정관 규정이나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임원보수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사실상 피고를 공동으로 운영한 원고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피고에게 임원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C 2인의 주주로 구성된 피고의 사원총회 결의는 결국 원고와 C 둘의 합의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에게 월 5,000,000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임원보수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의 임원보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 내지 11,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13. 40,000,000원, 2019. 10. 26. 3,000,000원, 2019. 10. 28. 7,000,000원, 2019. 11. 8. 10,000,000원, 2019. 11. 12. 4,000,000원, 2019. 11. 26. 5,000,000원, 2019. 12. 4. 6,000,000원, 2019. 12. 17. 5,000,000원, 2020. 1. 8. 15,000,000원, 2020. 6. 9. 5,000,000원, 2020. 7. 2. 30,000,000원, 2020. 7. 23. 30,000,000원, 2020. 8. 13. 20,000,000원, 2020. 9. 4. 30,000,000원, 2020. 9. 28. 50,000,000원 합계 260,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의 공식적인 회계장부와 피고의 회계담당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돈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차입금으로 처리한 후 나중에 수시로 이를 변제 받았던 점, 피고가 별도로 증자절차 등을 밟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돈을 출자금과 별개인 원고에 대한 차입금으로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 8. 13.부터 2020. 9. 28.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운영자금으로 합계 2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에서 원고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1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달리 피고의 공동경영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돈을 출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G와 공동하여 피고의 설립 당시 사원 또는 이사로서 출자금 납입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00,000,000원을 가장납입한 채 실제로 출자한 적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하지 않은 자본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출자 자본금 지급청구권을 반대채권으로 원고의 위 각 청구의 근거가 되는 채권과 상계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와 G이 피고의 자본금을 가장으로 납입하였다거나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인 회계장부 어디에도 출자 자본금의 미납상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20. 6.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약정한 미지급 임원보수로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수지급일인 2022. 4.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5.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 미변제 차용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8.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1) 피고의 상인으로서의 대외적 거래관계가 아닌 내부적 계약에 기한 보수지급의무로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